

수원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가합131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 변호사 조무연

변론 종결2021. 12. 22.

판결 선고2022. 2. 9.

주 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C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4. 2. 접수 제853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C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4. 2. 접수 제853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C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1	2014. 6. 3.	중소기업은행	2015. 6. 3. / 2020. 5. 29.	90,000,000 / 85,000,000
2	2014. 10. 31.	중소기업은행	2015. 10. 30. / 2020. 10. 23.	270,000,000
3	2015. 6. 16.	중소기업은행	2016. 6. 16. / 2020. 6. 12.	400,000,000 / 388,000,000
4	2017. 6. 30.	D은행	2018. 6. 29. / 2020. 6. 26.	720,000,000 / 680,000,000
5	2017. 7. 4.	중소기업은행	2018. 7. 4. / 2020. 7. 3.	540,000,000 / 510,000,000
합계		2,020,000,000 / 1,933,000,000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C이 대출금을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C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 모든

부채채무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등

1) C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 2020. 5. 11. 기한이익상실로 신용보증사고를 냈고, 중소기업은행은 2020. 5. 21.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D은행도 2020. 5. 4.자 이자연체를 이유로 2020. 7. 6.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20. 7. 7. 중소기업은행에 1,260,338,998원을, 2020. 7. 13. D은행에 684,415,726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고, 중소기업은행 대위변제금 중 958,680원을 회수하였으며, 추가보증료는 합계 1,089,110원이 발생하였다.

다. C의 처분행위 등

C은 2020. 4. 2.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4. 2. 접수 제85362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0. 4. 2. 접수 제85363호로 채권최고액 3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더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지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하였고, ②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에는 C이 이미 회생개시신청을 준비하는 등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데다가, C은 그 후 1개월도 경과하기 전인 2020. 4. 29. 실적감소와 마진감소, 자금 유동성 악화,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압박과 유동자금 부족 심화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 회생개시신청을 하여 2020. 5. 28.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구상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며, ③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5. 28. 당시 C의 재무상태는 자산 5,619,766,000원, 부채 11,556,900,000원으로, 부채가 5,937,134,000원 많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약 2개월 전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도 C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각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불과 1개월도 지나기 전 회생개시신청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들의 선의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C의 각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갱폼(철제 콘크리트 거푸집) 고철을 선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C에 선수금을 지급한 후 고철을 수거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는데, C이 2020. 3. 말경 선수금을 지급받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F(E의 자회사) 산하 현장의 건설자재 납품을 포기함에 따라 선수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은 C에 갱폼 선수금으로 2017. 12. 26.부터 2019. 12. 10. 70,000,000원을 지급하기까지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4. 1. 정산 후 72,157,379원의 선수금 잔액이 있었으며, E 전 현장 물량 및 타 현장 물량(충청 상부 현장 제외)에 관하여 위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② 피고 B은 C에 갱폼 선수금으로 2018. 7. 20.부터 2020. 2. 5. 90,000,000원을 지급하기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7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 4. 1. 정산 후 379,325,947원의 선수금 잔액이 있었으며, E 전 현장 물량 및 타 현장 물량(충청 이남 현장 제외)에 관하여 위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가 5,100,000,000원이고,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3,840,000,000원으로 담보에 여유가 있었으며, 거액의 신용대출이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내용의 감정서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C 소유의 부동산 가액은 2020. 6. 10. 합계 4,147,211,000원으로 감정되었으며, C의 무담보대출이 전혀 없으리라 생각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들이 2019. 12.경부터 지급한 선수금은 위 E 등 산하 현장에 대한 선수금으로 보이는데, C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것은 C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다.

③ 회생계획안(갑 제15호증)에는 C이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대구 지역 중견 건설사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분양 실적이 감소하고 기존 공사 착공이 연기되어 C 제품에 대한 발주가 감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C의 납품 능력 한계로 E 산하 현장의 납품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④ 피고들은, C의 대표이사 G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제안하였다고 하나, G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30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부인하고 회생채권(대여금 채권)으로만 시인하였으며, 피고들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각 조사확정재판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G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양훈

판사이용욱

판사김동현

별지